

남양주시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711
----------	-----

제 출 일 : 2025. 5. 30.

제 출 자 : 남양주시장

1. 폐지이유

- 동 조례는 행정사무의 수행, 공익목적의 달성 또는 시책 추진에 기여한 민간인에게 실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지급 대상 및 기준을 규정한 조례이나,
- 현재는 개별 법령 및 조례, 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에 따라 민간인에 대한 보상(포상)이 이루어지고 있어 폐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「남양주시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」 폐지

3. 참고사항

- 부서협의결과
 - 1) 협의결과
 - 비용추계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
- 입법예고 결과
 - 1) 예고기간 : 2025. 4. 3. ~ 2025. 4. 23.(20일간)
 - 2) 예고결과 : 의견없음

남양주시 조례 제 호

남양주시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폐지조례안

남양주시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는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관·과		예산과
입안자	관·과장 직위·성명	예산과장 안병찬
	팀장 직위·성명	예산1팀장 최정훈
	담당자 성명·전화	이애영 (590-4202)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 수반 요인 및 관련조문

가. 자치법규안명 : 남양주시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폐지조례안

나. 재정 수반 요인 : 해당사항 없음

2. 미 첨부 근거 규정

「남양주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1호

3. 미 첨부 사유

「남양주시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」는 행정사무의 수행, 공익목적의 달성 또는 시책 추진에 기여한 민간인에게 실비를 지급하기 위해 지급 대상 및 기준을 규정한 조례였으나, 개별 법령 및 조례와 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에 따라 민간인에 대한 보상(포상)이 이루어짐에 따라 그 효용성이 없어져 폐지하는 사항으로 예산 상 조치가 수반되지 않음

4. 작성자

기획조정실 예산과장 안 병 찬

붙임2 입법예고 결과보고

- 오늘과 내일을 잇는 미래도시 남양주 -



남 양 주 시



수신 내부결재

(경유)

제목 「남양주시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」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결과보고

1. 예산과-3142(2025. 3. 27.) 관련입니다.
2. 「남양주시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」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「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」 제2조에 따라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.

가. 자치법규 : 「남양주시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」 폐지조례안

나. 입법예고 기간 : 2025. 4. 3. ~ 2025. 4. 23.(20일간)

다. 입법예고 방법 : 시보,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

라. 입법예고 결과 : 의견 없음 / 의견제출 0건

마. 향후계획 : 제506회 조례·규칙심의회 상정

붙임 입법예고문 1부. 끝.

주무관	이애영	예산1팀장	최정훈	예산과장	안병찬	기획조정실장	전결 2025. 4. 25. 구형서
협조자	의회법무팀장 김설	의회법무과장	양기영				
시행	예산과-4201			접수			
우	12232	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, (금곡동) (금곡동)				/ http://www.nyj.go.kr	
전화번호	031-590-4202	팩스번호	031-590-8319	/ lay1631@korea.kr		/ 대국민 공개	

- 정약용의 상상을 깨우는 남양주 -